

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융자 계획

202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융자 계획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. 1. 24.

용 산 구 청 장



1. 융자 규모: 3억원

2. 융자 대상 및 조건

가. 융자대상: 용산구 소재 해당 업종 영업자

나. 융자조건

| 구분     | 대상                       | 융자 한도액                   | 연이율 | 상환방법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시설개선자금 | 식품제조가공업소                 | 최대 1억원<br>(총 소요금액의 80%)  | 2%  | 3년 거치<br>5년 균등 분할상환 |
|        | 일반·휴게음식점, 제과점,<br>위탁급식영업 | 최대 1억원<br>(총 소요금액의 80%)  | 2%  | 2년 거치<br>3년 균등 분할상환 |
|        |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              | 최대 2천만원<br>(총 소요금액의 80%) | 1%  |                     |
| 육성자금   | 모범음식점                    | 최대 1억원                   | 2%  |                     |

※ 융자 제외대상(조례 시행규칙 제7조)

- 단란주점 · 유흥주점 영업자(단,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제외)
- 일반음식점 영업자중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와 혐오식품 취급업소
- 기존 융자금 수혜업소로 원리금 상환중인 업소

다. 자금별 사용조건

- 시설개선자금: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, 개·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·설비 등을 설치·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
  - 적합 예) 위생시설 개선공사, 설치가 필요한 대형냉장고 등의 주방기기 구입 등
  - 부적합 예) 식기 · 조리용품 등 단순소모성 주방용품 구입 등
- 육성자금: 모범음식점의 시설 개선이나 업소 운영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
  - 부적합 예) 인건비 · 임대료(보증금) 지급, 융자금 상환 등

라. 융자금의 상환방법: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함

마. 융자금의 상환기간 전 조기환수 대상(조례 시행규칙 제11조)

-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
-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(영업소폐쇄)된 경우
- 주류전문 판매업소 또는 혐오식품 판매업소로 업종(업태) 변경한 경우
- 채무승계가 되지 않은 영업자 변동의 경우
- 용산구 이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(단,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제외)

### 3. 융자 신청 및 구비서류

가. 신청기간: 자금 소진 시까지

나. 신청장소: 용산구청 4층 보건위생과

다. 구비서류 (용산구청 보건위생과 비치,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)

- (별지 제2호)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1부
- (별지 제3호)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(시설개선자금 신청 시) 1부
- (별지 제4호)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(육성자금 신청 시) 1부
- (별지 제5호) 사업이행확약서 1부

### 4. 기타 : 부동산 또는 신용 담보 필요

융자대상자는 융자취급은행인 우리은행 용산구청지점을 통한 심사(담보능력)를 거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가능 여부 심사 후 융자 가능

### 5. 문의처

가. 신청문의: 용산구청 4층 보건위생과, 담당자 박현미, ☎ 02-2199-8032

나. 담보상담: 우리은행 용산구청지점, ☎ 02-795-8014(내선 311)